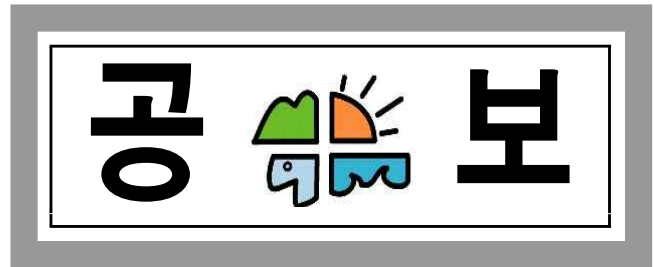


# 속 초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        |         |
|--------|---------|
| 선<br>람 | 기 관 의 장 |
|        |         |



제1189호 2019년 1월 4일(금)

## 고 시

- 속초 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지형도면 고시..... 2

## 공 고

- 속초시 하도급업체 보호 및 체불임금 방지 조례안 입법예고 ..... 3
- 건축허가(신고)시 지정하는 도로 지정 공고 ..... 12
- 2018년 지역안전도 진단결과 공시 ..... 14

발행 : 기 획 예 산 담 당 관 (전화 : 639-2223, FAX : 639-2106)

속초시고시 제2019-2호

## 속초 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지형도면 승인 고시

1. 강원도 고시 제2018-478호(2018.12.14.)로 고시된 속초 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속초시청 건설도시과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9년 1월 3일

속 초 시 장

### 가. 결정(변경) 취지

- 노후된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및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 청사의 신축을 통한 사무실 부족문제를 해결하고, 근로자를 위한 복리후생시설 및 숙소를 확충함과 동시에 민원인을 위한 시설개선을 위하여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을 결정하고자 함

나. 위 치 : 강원도 속초시 동명동 300번지 일원

### 다. 속초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및 사유서

#### 1) 공공·문화체육시설

##### 가) 공공청사 결정조서

| 구분 | 도면<br>표시<br>번호 | 시설명      | 시설의<br>종 류 | 위치                        | 면 적(㎡) |            |          | 최초<br>결정일 | 비고 |
|----|----------------|----------|------------|---------------------------|--------|------------|----------|-----------|----|
|    |                |          |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
| 신설 | 10             | 공공<br>청사 | 법원<br>청사   | 강원도 속초시<br>동명동 300일원      | -      | 증)11,114.5 | 11,114.5 |           |    |
| 신설 | 11             | 공공<br>청사 | 검찰청<br>청사  | 강원도 속초시<br>동명동<br>306-2일원 | -      | 증)11,091.5 | 11,091.5 |           |    |

##### 나) 공공청사 결정사유서

| 도 면<br>표시번호 | 시 설 명 | 결정내용                             | 결 정 사 유                                                    |
|-------------|-------|----------------------------------|------------------------------------------------------------|
| 10          | 공공청사  | ◦ 공공청사 신설<br>- 면적 :<br>11,114.5㎡ | ◦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청사의 공공업무시설 기능 확보 및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  |
| 11          | 공공청사  | ◦ 공공청사 신설<br>- 면적 :<br>11,091.5㎡ | ◦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 청사의 공공업무시설 기능 확보 및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 |

라. 지형도면고시 근거 : 강원도 고시 제2018-478호(2018.12.14.)의 “속초 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 고시

## 속초시 하도급업체 보호 및 체불임금 방지 조례안 입법예고

「속초시 하도급업체 보호 및 체불임금 방지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제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속초시 법무행정사무처리규칙」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31일

### 속 초 시 장

1. 자치법규명 : 속초시 하도급업체 보호 및 체불임금 방지 제정조례안

2. 제정이유

속초시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속초시 하도급업체 보호 및 체불임금 방지조례」를 제정하여 하도급업체 보호 및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수평적인 관계에서 상생 협력하고, 체불임금을 방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건설약자를 보호하고 함.

3. 주요내용

가. 시장, 수급인, 하수급인의 책무(안 제4조, 제5조)

나. 하도급대금 직불제 및 표준하도급 계약서 작성(안 제7, 제8조)

다. 공동수급 등 지역업체 참여, 하도급 대금 지급 등(안 제9조, 제10조)

라. 강원대금알림e의 적용 등(안 제11조)

1) 적용범위 : 공사기간 30일 이상이고 종합 2억원, 전문 1억원, 기타(용역 등) 8천만원 이상인 사업에 한함.

2) 기대효과 : 원도급업체가 하위 사업자(하도급, 건설근로자, 장비/자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시스템 활용, 용도별(개별) 자동이체 되도록 대금지급을 보장

3) 시행시기 : 속초시 ⇒ 2019년 1월 부터 전면시행

#### 4. 자치법규안 : 불임

#### 5. 의견제출

속초시 하도급업체 보호 및 체불임금 방지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장(참조 : 건설도시철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5star@korea.kr](mailto:5star@korea.kr)

2) 주소 : 강원도 속초시 중앙로 183 속초시청 건설도시철도과  
(건설행정팀) / 우) 24826

3) 팩스 : 033-639-2485

#### 6.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청 건설도시철도과 건설행정팀(033-639-274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속초시 하도급업체 보호 및 체불임금 방지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의 확립과 체불임금 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상생 협력을 도모하고 건설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근로의욕 제고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급공사”란 속초시(직속기관, 사업소를 포함한다)가 발주하는 공사·용역을 말한다.
2. “발주자”란 건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하며 발주부서, 계약담당자, 공사감독자가 해당된다.
3. “도급”이란 원도급·하도급·위탁, 그 밖에 명칭의 여하에 불구하고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4.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하기 위하여 원도급자가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5. “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며, 하도급관계에 있어서 하도급 하는 건설업자를 포함한다.
6. “하수급인”이란 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
7. “임금”이란 수급인이 근로의 대가 및 건설기계 임대료를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기준법」 제2조와 제34조 및 제46조에 따른 임금·퇴직급여·휴업수당 및 건설기계 임대료 등을 말한다.
8. “건설기계 임대료”란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계약 체결하여 지급하는 기계 경비를 말한다.

9. “체불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36조와 제43조에 따라 청산되거나 지급되어야 함에도 청산·지급되지 못한 임금과 건설기계를 사용한 후 미지급된 임대료를 말한다.

10. “공사감독자”란 「건설기술진흥법」 제4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과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건설사업기술관리자 등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향상을 위해 확인·점검·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11. “하도급관리시스템(이하“하도급지킴이”라 한다)”이란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와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조달청장이 구축·운영하는 전자적 시스템을 말한다.

12. “대금지급 확인시스템(이하“강원대금지킴이”라 한다)”이란 하도급대금의 지연 지급과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고 적기지급을 보장하기 위해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건설공사 대가를 지급할 때 수급인·하수급인·노무자 및 장비·자재업자에게 대금을 구분해서 지급하고 각 이해 당사자들이 이를 실시간으로 확인 할 수 있도록 강원도지사가 구축·운영하는 전자적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속초시가 발주하는 관급공사를 대상으로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하도급 부조리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의 상생협력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교육·홍보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정한 하도급 문화 정착을 위한 시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민간에 확산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수급인과 하수급인의 책무) ①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시의 발주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관련 법령과 이 조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공정한 하도급문화 정착을 위한 시의 정책에 적극 협조

하고, 체불임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하도급의 적정성 심사 및 공정성 확보) ① 발주자는 원도급자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하도급계획서를 제출받아 하도급 할 공사의 주요 공종 및 물량, 하도급자의 선정방법 및 선정기준, 하도급 계약내용 등의 타당성과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하도급관계의 공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공사감독자는 공사현장에서 하도급 관련 부조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하여 건설공사가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는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하도급 계약내용의 심사를 통하여 공사에 필요한 실질적인 공사비가 하도급자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하도급대금 직불제 권장) 발주자는 계약체결 시 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 직불동의서 작성을 적극 권장한다.

제8조(표준하도급계약서 작성) 발주자는 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의 부당한 계약을 근절하고 동반성장을 유도하기 위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른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적극 권장한다.

제9조(공동수급 등 지역업체 참여 권장) 시장과 수급인은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속초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제3조의3의 규정에 따라 공동수급 등 지역업체 참여를 적극 권장할 수 있다.

제10조(하도급대금 지급 등) ①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에 대해서는 법 제35조를 적용한다.

②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선금과 기성금을 포함한다)을 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이 제1항의 대가를 지급한 경우 대가 지급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거쳐 발주자에게 지급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하도급지킴이 또는 강원대금알림e를 통해 하도급대금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2항의 서면 보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⑤ 공사감독자는 수급인으로부터 제출받은 하도급대금 지급내역을 하수급인의 수령내역과 비교하여 대금 수령내역을 대조·확인하여야 한다.

제11조(강원대금알림e의 적용 등) ① 발주자는 공사기간이 30일 이상이고 총합 2억원, 전문 1억원, 기타(용역 등) 8천만원 이상인 사업에 대하여 강원대금알림e를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민간투자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경우

2. 그 밖에 각 이해당사자의 금융거래가 불가능한 경우 등 발주자가 강원대금알림e의 적용이 불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강원대금알림e를 적용하는 사업의 경우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건설공사 대가를 지급하기 이전에 이루어진 수급인, 하수급인, 노무자, 장비·자재업자 간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임대료, 자재대금 등의 지급에도 반드시 강원대금알림e를 적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발주된 사업을 계약한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강원대금알림e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발주자·수급인·하수급인은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임대료, 자재대금 등이 적절하게 지급되도록 강원대금알림e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12조(하도급관계의 불공정거래 방지) 발주자는 수급인과 계약체결 시 계약서에 불공정거래 및 이중계약 등 불법하도급을 체결한 수급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따른 출석요구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조(하수급인의 성실의무) ①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은 하수급인은 공사의 품질향상과 공기 지연 방지를 위해 예정공정표대로 공사를 성실히 추진하여 수급인에게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하수급인이 성실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 제35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시장은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관급공사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저가하도급, 대금 미지급 등 하도급 부조리 근절을 위한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5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발주자는 하도급업체 보호가 필요한 때에는 관련 협회 등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관계 법규의 준수) 시장은 공사를 시행하는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관계법규 준수 여부를 관리하여야 하고, 해당 법령 및 조례에 위반할 경우 즉각 시정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시정하지 않을 경우 관계 법규에 따라 입찰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 계 법 령 발 취

##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4조(퇴직급여 제도)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 제도에 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대로 따른다.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 ①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의 당사자(「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도급계약은 제외한다)는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 28.>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③ 제1항에 따른 계약의 당사자는 그 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료, 임대차 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서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은 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④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계약으로 본다. <개정 2014. 1. 28.>

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계약의 당사자가 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제4항에 따른 표준약관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신설 2014. 1. 28.>

⑥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발주자인 경우 해당 발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 작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 19.>[전문개정 2009. 12. 29.][제목개정 2014. 1. 28.]

## □ 건설기술진흥법

제49조(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 의무) ① 발주청은 건설공사가 설계도서, 계약서,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도록 하고 건설공사의 품질 및 현장의 안전 등 건설공사를 관리하기 위하여 공사감독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청이 제39조제2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사감독자의 업무 내용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는 이에 따른 감독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① 발주자는 하수급인이 건설공사를 시공하기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하도급계약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할 수 있다.

제31조의2(하도급계획의 제출) ① 건설업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 하도급 관계의 공정성 확보와 건설공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급할 공사의 주요 공종 및 물량, 하수급인 선정방식 등 하도급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자는 제출받은 하도급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하고, 그 이행 여부를 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3.>

제35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 지급채무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한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9. 4. 1.]

## □ 속초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제3조의3(공동도급 등 지역업체 참여 권장)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해당 공사의 시공품질 저하 또는 원활한 공동수급체 구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공동도급 비율과 하도급 비율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아래 각 호의 내용을 적극 권장할 수 있다.<신설 2011.7.1>

1.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대표사의 경우 지역건설업체와의 공동도급 비율을 49퍼센트 이하
2.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는 지역건설업체와의 하도급 비율을 50퍼센트 이상
3. 민간이 개발하는 지역건설산업에 대한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공동참여 및 하도급 비율의 확대

## □ 지방자치법

제41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④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건축허가(신고)시 지정하는 도로 지정 공고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나목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신고)시 그 위치를 지정하는 도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정·공고 합니다.

2019년 01월 03일

### 속 초 시 장

1. 공 고 명 : 건축허가에 따른 도로지정
2. 도로위치 : 도로지정 조서 참조
3. 공고기간 : 2019. 01. 04.~ 01. 18.(14일)
4. 도로지정 조서

| 소재지        | 지번          | 지목 | 면적(m <sup>2</sup> ) |          | 소유자 | 건축위치<br>건축물 용도<br>허가(신고)번호<br>(건축허가일)<br>노학동 874-1<br>단독주택<br>2018-건축디자인과-건축신고-50<br>(2018.07.10) | 비고           |
|------------|-------------|----|---------------------|----------|-----|---------------------------------------------------------------------------------------------------|--------------|
|            |             |    | 공부<br>면적            | 지정<br>면적 |     |                                                                                                   |              |
| 속초시<br>노학동 | 874-1<br>번지 | 대  | 695                 | 3        | 정성구 |                                                                                                   | 건축주<br>: 정성구 |

5. 공고방법 : 전국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판
6. 관계도서 : 속초시 건축과 비치(열람가능)
7. 문의사항 : 속초시 건축과 건축행정팀(033-639-2769)

## 위치도 및 현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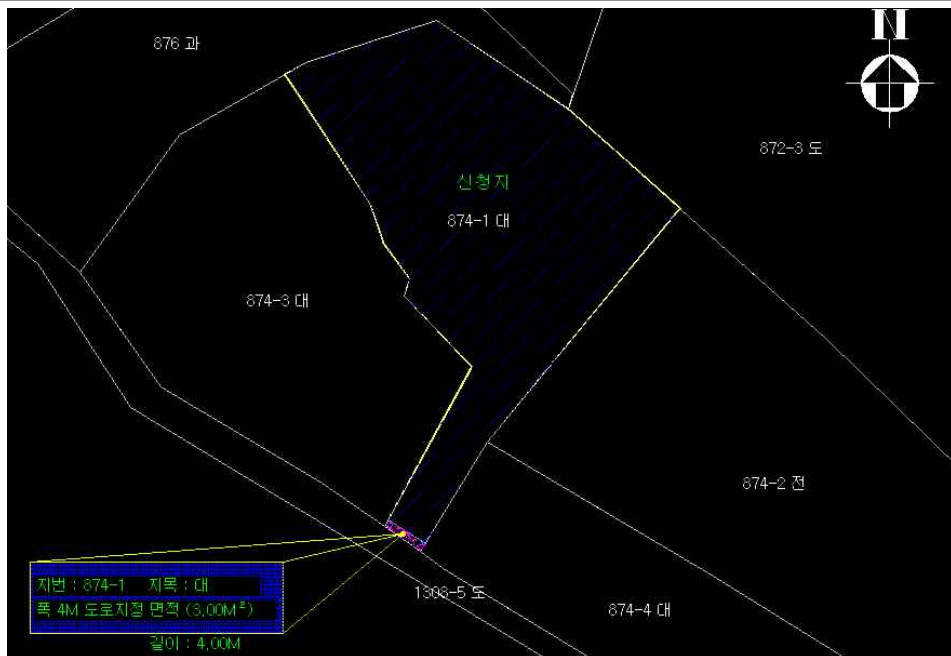
- 위치도 및 현황도를 작성합니다.



위치도

축척

NONE



현황도

축척

NONE

## 2018년 지역안전도 진단결과 공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3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2에 따라 속초시 2018년 지역안전도 진단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시합니다.

2019년 01월 03일

### 속 초 시 장

| 시 도 | 시군구 | 재해위험<br>요 인 | 예방대책<br>추 진 | 예방시설<br>정 비 | 안전도<br>지 수 | 등 급  |      |    |
|-----|-----|-------------|-------------|-------------|------------|------|------|----|
|     |     |             |             |             |            | 2017 | 2018 | 변동 |
| 강원도 | 속초시 | 0.309       | 0.956       | 0.756       | 0.396      | 7    | 1    | -6 |

※ (안전) 1등급 <-----> 10등급 (위험)